

제 2020 - 4호

기 관 경 고

기 관 명 : 충청북도 영동군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승진 임용명부와 다르게 승진임용을 부적정하게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어 경고처분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1.

행 정 안 전 부 장 관

2020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공개

◆ 2020. 2. 19. ~ 3. 6.(13일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 33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관경고·징계요구

제 목 5급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영동군

징계대상자 영동군 ○○○○○ 지방○○○○○ ○○○
(전 ○○○○국 ○○과)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영동군 ○○○○국 ○○과 지방○○○○○ ○○○

내 용

충청북도 영동군은 5급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후보자 명부상 점수와 교육훈련성적을 합산해서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에 걸쳐 승진후보자명부상 후순위자를 먼저 교육을 보내어 선순위자보다 먼저 승진시키고, 2회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후순위자를 선순위자보다 먼저 승진임용하였다.

지방○○○○○ ○○○은 2018. 7. 1.부터 2019. 9. 9.까지, 지방○○○○○ ○○○은 2019. 9.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장으로 인사업무를 총괄하였거나 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서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5조제1항에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5조제3항에서는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날짜에 승진 의결된 5급 승진자를 같은 기수의 승진자 교육에 보내고, 승진대상자별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과 교육성적을 합산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있으면 승진임용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기관 및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5급 승진자 교육을 나누어 보내게 될 경우에도 동일한 날짜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된 대상자들

의 승진자 교육이 완료된 이후 ‘통합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위 관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4. 24., 2018. 6. 27., 2019. 7. 26. 동일 날짜에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고,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 선순위자가 아닌 후순위자를 임의대로 먼저 승진자 교육에 보냈으며,

설사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승진자 교육을 나누어 보냈다 할지라도 이후에 교육을 다녀온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가 완료된 이후 ‘통합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순위가 낮은 대상자를 먼저 교육을 수료하게 한 다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높은 순위자들보다 먼저 승진임용하였다.

또한 2017. 4. 24.에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여, 같은 날짜에 승진자 교육(2017. 7. 3.~ 8. 11.)을 수료한 ○○○과 ○○○에 대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지도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과 교육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더 높은 ○○○이 아닌 ○○○을 먼저 승진임용하였으며,

2018. 9. 20.에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여, 같은 날짜에 승진자 교육을 수료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도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가 낮은 ○○○(2순위)를 순위가 높은 ○○○(1순위)보다 먼저 승진임용하였다.

<표> 임의로 5급 승진자 교육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사례 등

승진 심사일	직렬/ 직급	승진임용일	순위	성명	합산성적			교육 기수
					근무성적	교육점수	합산점수	
2017.4.24.	일반행정 /6급	2017.7.20.	2 (세무)	○○○	66.55	28.44	94.99	17년 6기
		2017.8.14.	1 (행정)	○○○	68.60	28.29	96.89	17년 7기
		2018.1.1.	1 (세무)	○○○	69.26	27.75	97.01	
2018.6.27.	일반행정 /6급	2018.8.24.	2	○○○	68.60	28.67	97.27	18년 6기
			3	○○○	68.11	28.91	97.02	
		2018.10.15.	1	○○○	68.67	29.12	97.79	18년 8기
2018.9.20.	일반행정 /6급	2019.3.13.	2	○○○	68.06	28.33	96.39	18년 11기
		2019.9.10.	1	○○○	68.42	28.29	96.71	
2019.7.26.	일반행정 /6급	2019.11.5.	7	○○○	66.87	26.80	93.67	19년 10기
		2020.1.1.	3	○○○	68.48	29.27	97.75	19년 11기
			2	○○○	68.49	29.01	97.50	
		미승진	1	○○○	68.90	27.99	96.89	

※ 영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관서는 감사대상 기간(2017. 1월 ~2020. 2월 현재) 중 3차례에 걸쳐 승진 의결일이 같은 5급 승진 후보자 중 후순위자를 먼저 승진자 교육에 보내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높은 순위자보다 먼저 승진 임용하고,

2차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여야 함에도, 승진임용순위명부¹⁾의 후순위자를 선순위자보다 먼저 승진 임용함으로써 승진임용을 부당하게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1) 2017. 0. 00. 승진의결하고 같은 날 승진자 교육을 수료한 ○○○, ○○○의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지 않음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한 대상자는 순위와 관계없이 교육을 보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의 연령, 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보내왔으며, 승진임용순위명부 2순위를 먼저 승진임용한 것은 당시의 공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으며 1순위자도 동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5항의 “임용권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라도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으로 임용순위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승진임용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할 경우 승진임용 지연에 따라 그 개인의 총 급여나 연금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고, 지연되는 기간 중에 징계,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 관서는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임의대로 승진자 교육을 달리 보냄으로써 승진후보자명부상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임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후순위자를 선순위자보다 먼저 승진 임용함으로써 승진임용을 부당

하게 하였다.

특히 지방○○○○○ ○○○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가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2019. 8. 6.)을 공문 시행한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적정한 절차를 개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후순위자를 먼저 승진자 교육에 보내고,

더욱이 같은 날 승진교육을 수료한 승진임용 대상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도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후순위자를 선순위자보다 먼저 승진 임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안이 엄중하다.

따라서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기관경고] 5급 승진자를 임용함에 있어 법령에 정한 순위를 준수하시며, 승진자 교육시기를 임의 조정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도 통합 작성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라 승진 임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